

## 존·록크의 정치 철학에 관한 연구

- '소유권'을 중심으로 -

尹 貞 優

### 목 차

- I. 머 리 말
- II. 예비적 고찰 : 당시 영국의 역사적 배경
- III. 소 유 권
  - 1. 인간과 자연의 관계 ..... 공유권
  - 2. 개인과 특정사물의 관계 ..... 제한된 소유권
  - 3. 무제 약적 소유권
  - 4. 노 동
- IV. 국 가
- V. 맷 는 말
- 참 고 문 헌

### I. 머 리 말

“복위하신 우리의 위대한 윌리암 현 국왕의 왕좌를 정립하고, 민중의 동의로 그 칭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sup>1)</sup>을 의도한다는 서문을 가지고 명예혁명 직후에 출판된 존·록크의 ‘시민정부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은 오랫동안 명예혁명을 옹호, 찬미하여 정당화려는 정치적인 글로 여겨져 왔다. 오랜기간의 계급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명예혁명은 계급간의 일단의 화해를 이루한 것으로 그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사회질서를 인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질서를 옹호하고 그 핵심을 이론적으로 표현해 준 록크의 정치이론은, 휘그당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토리당으로부터도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고, 의회민주주의 또는 입헌군주제라는 당시 영국의 새로운 현정질서의 이론적 지주로 여겨졌다.

귀족과 부르조아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의 결합이 이루어진 뒤,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산업노동자와 부르조아간의 계급대립이 첨예화되자, 록크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현실정치이론의 구실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록크의 정치철학은 시대적 성격을 상실하고,

1) J.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171.

유럽정신사의 고전으로 초역사적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철학사내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의 밥발과 더불어 등장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치철학일반에 관한 관심과 논란을 야기시키자 이에 록크의 자유주의로서의 명성은 위협받게 된다. 거의 모든 정치철학은 일단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철학적 근거로 의심받았으며 록크의 철학도 예외일 수 없었다.<sup>2)</sup> 록크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곧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의외의 수확을 거두었다. 즉 의심에서 비롯된 연구는 종래의 연구가들이 의식·무의식적으로 간과해 온 많은 측면들을 발견해 냈으므로써, 록크의 정치철학은 자유주의라는 하나의 동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경향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것은 록크정치철학일반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수많은 논쟁을 야기시켰으며<sup>3)</sup> 이를 통해 록크이론에는 많은 보순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록크의 철학은 철학사의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로 새로이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록크이론의 내적 보순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의 철학의 진정한 의미와 그 역사적 성격을 밝혀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쓰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며 록크정치철학의 핵심적 내용인 ‘소유권’개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예비적 고찰 : 당시 영국의 역사적 배경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근거한 유럽세계경제와 절대주의를 탄생시켜 세계사의 전환점을 마련한 16세기 아래<sup>1)</sup> 가장 빨리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한 것은 영국이었다.<sup>2)</sup> 영국의 이같은 발전의 원인은 한·두 마디로 요약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의 특기할만한 사실은 첫째, 농업과 상공업의 근내화를 거의 동시에 진행시켜 상호 연관 속에서 성취하였다는 것과, 둘째, 하나의 통일된 경제와 정치의 장인 근대국가를 일찍

2) Willmoore Kendall, John Locke and the Doctrine of Majority Rule 1941.

3) 록크에 대한 논쟁은 그의 내적보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가장 논란되고 있는 문제는 첫째, 본유권을 부정하는 록크의 인식론과 소유권을 자명한 자연권으로 상정하는 그의 정치철학은 두가지 상반된 원리에 입각한 것인가 아니면 공통의 원리에 입각한 것인가 둘째, 록크의 ‘자연상태’는 평화상태인가 전쟁상태인가 세째, 그의 소유권개념은 공리주의적인가 비공리주의적인가 즉 신학적 윤리적인가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적원리를 이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가에 관한 것이다.

1)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p.133

2) 무엇이 전형적인가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내의 모든 국가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중심부적 경제를 전형적이라 표현하였다.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14, 15세기의 경기후퇴로 인해 농업소득이 급격히 줄자 영국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의 모직물공업이 생겨났다.<sup>4)</sup> 시골에서 생산된 모직물은 질은 좋지 않으나 값이 싼기 때문에 전량이 수출되었다.<sup>5)</sup> 이에 따라 양모가격이 뛰었고 이에 자극받은 토지소유자들은 목장조성을 위하여 인클로저를 강행하게 되는데<sup>6)</sup> 이것은 이후 영국의 역사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16세기의 인클로저는 첫째, 중·소농의 토지를 점차 대농이나 귀족의 소유로 전환시켰다. 둘째, 지주는 인클로저를 통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중세적인 토지공동권, 공동규제등을 배제하고 토지를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목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때는 경작지를 목장으로 전환시키고 곡물생산이 유리한 때는 목장을 경작지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째,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16세기의 인클로저는 식량부족과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급증을 야기했다. 즉 한편으로는 경작지가 목장으로 변경되어 식량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반해 다른 한편으로는 모직물공업발달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자 농업시장도 따라서 커졌으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자 17세기에는 양모생산이 아니라 곡물증산을 위한 인클로저가 강행된다. 그러나 이때의 인클로저는 단순히 목장을 다시 경작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지나 황무지를 새로운 경작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한 개량농업을 촉진하는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농업혁명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18세기 영국의 농업생산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네째, 16세기 인클로저에 의해 야기된 양모생산의 증가는 시골지역의 수공업을 더욱 확장시켰고 영국의 산업구조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이와같은 토지집중, 배타적 소유권의 성립, 생산력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등은 농민층과 귀족층을 분화시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클로저에 의해 대토지를

3) 이에 관하여 Perry Anderson은, 영국은 중세때부터 유럽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강력한 봉건군주를 가졌었고 상대적으로 귀족의 숫자가 적었으며 귀족과 교회의 권력이 약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Perry Anderson, *Die Entstehung des absolutistischen Staates* p.142 이에 반해 Christopher Hill은 블란서와의 100년전쟁 그리고 대귀족간의 내란인 장미전쟁으로 인해 귀족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약화된 귀족세력을 누르고 시작된 Tudor 왕조가 종교혁명을 단행함으로써 영국은 진정한 국민국가로 통일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Christopher Hill, *Change and Continuity* 참조. 그러나 시작은 언제였든지 간에 완전한 근대국가의 성립은 1688년에 완성되었다고 본 점에서는 Anderson과 Hill의 의견이 일치한다.

4) 중세의 영국은 양모생산으로 유명했으며 모직물생산은 도시의 길드제하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영국은 양모를 자국내에서 모직물생산에 이용하기 보다는 당시 모직물공업의 중심지였던 Flanders 지방에 수출하고 그곳에서 제조된 모직물을 수입하는 양모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14세기 중엽이후 영국은 양모수출을 억제하고 국내의 모직물공업을 육성하여 15세기 중엽에는 양모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김종현, *경제사* p.201-2.

5) 그중  $\frac{2}{3}$ 은 Antwerp로,  $\frac{1}{3}$ 은 블란서와 이베리아반도로 수출되었다.

6) 김종현, *경제사* p.229

획득한 지주, 자신의 토지를 경영하거나 또는 대토지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자본가적 농업가, 그리고 토지로부터 이탈된 농민인 농업노동자의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여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17세기의 농산물 수요증대와 가격상승은 지대수입에 의존하는 지주에게는 불리하게, 경영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여 귀족내부의 분화를 초래하고 자본가적 농업경영가들의 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회계층의 변화는<sup>7)</sup> 계층간의 대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이 대립은 일련의 혁명과정을 거쳐 근대국가를 형성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16세기에 활발해진 공업과 이에따른 상업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수립된 영국의 절대주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불러 일으킨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8)</sup> 바다를 건너 블란서를 정복하려던 100년전쟁이 실패로 끝난 뒤 영국내의 최강의 귀족집단사이에 벌어진 장미전쟁(1455-1485)은 결과적으로 영국 구귀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를 낳았다. 내란의 결과로 몰락한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막대한 토지와 수입을 갖게 된 튜더왕조의 헨리7세는 흑자재정을 기반으로 귀족의 세력을 진압하고 중앙집중화를 시도하여 절대군주제를 성립시켰다.

나아가 이런 기반을 물려 받은 헨리8세는 블란서와의 전쟁(1512-14, 1522-25)에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종교개혁<sup>9)</sup>을 단행하고 사원을 해체시켜 교회령의 수많은 토지를 몰수했다. 종교개혁은 국고를 강화시켜 왕과 의회의 마찰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으므로 왕은 귀족과 화해하게 되고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세력구축에 고무된 튜더왕조가 블란서의 발로아왕조와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그왕조사이의 분쟁에 간섭하여 아무 소득없는 무역분쟁에 말려들자 그것은 엄청난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를 막기 위해 국가는 강제대부와 화폐가치절하에 호소하는 한편 교회령몰수과정에서 얻은 왕령지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게 된다.<sup>10)</sup> 여기서 앞으로의 영국의 역사적 발전에 결정적인 두가지 사실이 발생한다.

첫째, 의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경제적 기반이 사라져 영국의 절대주의 왕권은 이때부터 계속 의회와의 싸움에 밀려 들게 되고 결국 몰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왕은 의회에 재정적으로 멀 종속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왕령지를 팔게 되나, 이것은 왕이 의회에 더욱더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인클로저에 의해 야기된 사회계층의 분화가 더욱 가속되고 왕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자본가적 농업가의 부와 정치적

7) 1540-1640년은 영국에서 농업자본가와 프로테타리아가 창조되기 시작한 계급형성의 시기라고 Wallerstein은 지적한다.

8) 세계경제체제안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있으나 대체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국가는 유럽세계경제에서 경제적 중심요인이었다는 점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9) 왕의 이혼문제를 둘러싼 교황파의 불화설은 단지 표면적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Perry Anderson, die Entstehung des absolutistischen Staates p.149-150.

10) Perry Anderson, 위의 책, p.155.

역할이 점점 비대해져 결과적으로 지대징수자로서의 봉건귀족세력을 약화시키고 근대적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

이로써 투더왕조의 정치적 안정과 권위는 무너졌고 자본주의적 경영을 시도하는 대토지 소유자 (Gentry)의 역할은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투더왕조 초기에는 구귀족세력에 대한 경제세력으로서 왕권의 보호를 받던 젠트리가 이제는 오히려 전제대상이 되었다. 그와 함께 젠트리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던 영국의 상·공업세력 또한 왕권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왕권은 봉건귀족에 대항하는 정치적 연합세력으로서 또 자신을 강화시켜 가기 위한 수입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세력의 지지를 필요로 하여 상공업을 장려하였으나 안정과 기존사회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왕권은 결코 상·공업층이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sup>11)</sup>

이런 과정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일관된 강한 힘이 아니었으며 전통적 특권을 누리는 봉건귀족과 새로이 부상하는 근대적 세력간의 투쟁장이었다. 이 두세력은 때때로 번갈아 가며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어느 쪽도 국가기구를 크게 강화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양쪽 다 반대편이 국가기구를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봉건귀족 - 왕 -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신세력간의 투쟁은 17세기의 영국을 내란과 혁명으로 몰아 넣고<sup>13)</sup> 결국 1688년 명예혁명에서 명백한 신세력의 승리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투쟁을 불러 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은 과세문제를 둘러싼 재정문제였다. 따라서 이것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왕권에 대항하여 지켜야 할 정치적 원칙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단지 신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휘그당에게 뿐만 아니라 구세력을 대표하는 토리당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은 명예혁명을 통한 계급간의 화해를 이룩한 이념이 되었다. 명예혁명은 봉건귀족이든 근대자본주의 세력이든, 자산가 (Propertyowner)<sup>14)</sup> 와 임의적 징세에 의해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려는 왕권의 전 근대적 정치세력간의 대립이었고, 따라서 이시대의 정치구호가 걸으로는 입헌군주제 또는 의회민주주의였으나 그것을 통해 실제로 의도된 바는 배타적 소유권의 정립이었다. 그려므로 자신의 시대를 이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록크가 바로 이 소유권개념에 자신의 정치철학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록크가 자신의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제

11) 절대주의 국가의 모순되는 양면성에 관하여 Perry Anderson, 위의 책 I장 1절 참조.

12) Wallerstein 위의 책 p.256

13) 이것은 Stuart 왕조의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왕권신수설로 더욱 악화되었다.

14) 1688년의 영국의 계급구성은 아직 완전히 자본주의적은 아니었다. 우선 납세자와 비납세자의 비율은 40.4 : 59.6 이었고 자신의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던 자산가와 임노동자, 구빈대상자, 결인, 집시등으로 이루어진 무산자의 비율은 58.7 : 51.3 이었다.

Macpherson, Die Politische Theorie des Besitzindividualismus p.312-3.

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소유권 개념을 분석해 보겠다.

### III. 소 유 권

#### 1.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인류의 공유권

자연권으로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규정되는 소유권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록크는 당시 전통적인 견해로서 암묵적으로 당연시 되어 오던 다음의 몇가지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1) 인간은 생존권을 자연권으로 가진다. (§25) 2) 신은 인간에게 이 세계를 그의 생존을 위해 이용하도록 공유물로 부여하였다. (§26) 3) 신은 또한 인간에게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하였다. (§26)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록크가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러한 공유물의 사유화가 가능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25)

#### 2. 개인과 특정사물과의 관계……… 제한된 소유권

따라서 록크는 그 이전의 다른 이론가들처럼 세계는 인류의 공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자연상태에서의 사적소유권 있을 수 없으며 소유권은 계약에 의해 얻어지는 사회적·정치적 권리라 보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이미 공유물의 사유화가 이루어 지며 이는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임을 주장한다.<sup>1)</sup> 이를 위해 록크는 소유권을 인간과 자연이라는 우적인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사물의 관계로 확원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즉 자연에 대한 인류의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의 일부분인 특정사물을 점유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된다. (§26)

이때 록크는 또 다른 하나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이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 제 4의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그의 독특한 소유론이 성립한다. 그것은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그것의 활동 측 노동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노동이 가해진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또한 갖는다는 것이다. (§27)<sup>2)</sup> 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

1) Gough, J. Locke's Political Philosophy p.74.

2) '모든 것의 가치의 차이를 낳게 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 (§40)이라는 록크의 생각은 후에

Adam Smith, Ricardo, Marx 등의 노동가치설의 근거가 되었다. 인간의 '노동'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안에서의 인간의 활동이며 인간의 욕구를 위해 자연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연에 대해 가하는 힘의 행사だ라고 본점을 놓았지만 Marx의 노동의 본질정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록크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의 노동이 정치사회가 결성된 이후에도 그대로 실현된다. 즉 노동의 본질이 초역사적으로 실현된다고 본 반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본질적 노동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뿐 노동의 역사적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시대의 노동은 자본가가 자연의 일부인 노동의 대상(원료) 뿐만

을 사용하려면 우선 자신의 노동을 거기에 가하여 자연이 공급해 준 상태로부터 그것을 끄집어 내야만 하며 이때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인 자연의 일부는 모든 인류의 공유여야 하는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개인의 노동이 가해진 것으로 즉 그 개인의 것이 첨가된 것으로 그 개인의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기초를 갖고 있다”는 (§44)는 형이상학적 전제에 근거하여 록크는 사유재산의 선형적 평등성을 주장한다. (§35) 3)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인류는 자연에 대해 공유권을 가지므로 유적 존재로서의 각 개인은 자연의 각 부분에 대해 자신의 노동을 가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사람이 노동을 하여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1)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록크는 1) 남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 (enough and good) 이 남아 있는 한 (§27) 2) 누구든지 그 재화가 손상되어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28) 가져야 한다는 제한을 소유권에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역사의 초기 즉 천연자원은 풍부하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는 적었으며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개인노동력의 한계가 매우 낮았던 시절에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자원의 고갈,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력의 발전, 교환경제의 발달과 화폐의 도입 그리고 비이성의 도래<sup>4)</sup> 등에 의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31) 5)

아니라 인간의 자연의 점유과정에 개입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력 또한 임금과 교환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든 뒤 노동대상에 투입시키므로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사이의 관계 ( ein Prozeß Zwischen Dingen, die der Kapitalist gekauft hat, Zwischen ihm gehörigen Dingen )로 전락한 것이다.

3) 이것을 록크는 당시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던 인클로저에 관해 그대로 적용한다. “토지의 소유권도 분명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획득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인간이 밭을 잡고 씨를 심으면 개량하고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의 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 노동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러한 정도의 토지를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로 둘러쌓은 생 (enclose) 이다” (§32) 따라서 “토지를 정복하며 경작하는 것과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결과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 즉 전자는 후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35)

4) 록크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갖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화폐도입에 의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생긴 뒤 생겨난 것으로 본다. (§36, 37)

5) 당시 지구위에 아직도 제한된 소유권이 통용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다고 록크는 생각했다. “우리들이 보는 오늘날의 아메리카는 아직도 아시아나 유럽의 초기시대의 하나의 본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8)

## 3. 무제약적 소유권

록크는 인간의 역사를 화폐도입이전과 화폐도입이후의 질적으로 다른 두 단계로 나눈다.<sup>6)</sup> 화폐사용이전에는 자연법이 소유권에 대해 가하는 세한에 따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이상의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여 소유권이 시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었던 반면, 화폐도입이후에는 자연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또 그에 따라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비이성적 욕망이 생겨나 개인간의 소유권의 시비의 여지가 생겨났다. 록크는 이와같이 발생한 소유권분쟁에 대해 단순히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여 강력한 국가전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분쟁가능한 시기에도 자연법에 따른 정당한 소유권이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무제약적 소유권의 편연성을 주장하게 된다.

소유권에 대한 자연법의 제2의 제한 “누구든지 그 재화가 손상되어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만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첫째 ‘사용’ 개념을 단지 개인의 소비에 국한시키지 않고, 양도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고 (§46), 둘째 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영원히 썩지 않는 재화를 인간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든 인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 (§36)으로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정당한 소유권의 한계를 넘었느냐 아니냐는 그의 소유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중에서 무엇인가가 썩어 버렸느냐 않았느냐에 있는 것인데, 화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은 이러한 자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46)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사용된 직접적 동기가 “근면의 정도가 나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비율의 소유물을 가지게 되는 경향” (§48)이 있기 때문이며,

6) 록크는 인간들이 ‘동의로써 (by Consent)’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화폐사용이 소유권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이러한 록크의 주장은 화폐사용이전과 이후의 두 질적으로 다른 두 시대의 구분이 자연상태와 정치적 사회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상태자체의 질적으로 다른 두 상태인가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관해 김동수는 자연상태와 정치적 사회의 구분과 화폐사용이전 이후의 구분은 일치한다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동의’라는 용어에 집착함으로써 빚어진 오해이다. 록크에서 ‘동의’ 또는 ‘계약’은 여러가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정치적 사회’를 결성하자는 동의는 수많은 계약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화폐도입은 정치적 사회결성 이전의 사건이며 따라서 소유권 분쟁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겨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자연상태를 지양하고 정치적 사회로 이행해야 할 편연성이 록크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상태가 만약 소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라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상태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자연상태가 소유권 분쟁을 통한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소유권분쟁의 원인이 되는 화폐사용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사용에 동의함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최대한의 노동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48)<sup>7)</sup> 따라서 록크에 따르면 화폐사용 이후에 발생한 재산분배의 불공평한 현상은 본질적으로 근면의 정도가 다르다는 인간본성에 기인한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인간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화폐사용에 의해 결과한 것으로 전혀 자연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자연권이 실현된 것이다.

반면 자연법이 소유권에 대해 가하는 또 하나의 제약 즉 “남에게도 충분하게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이 남아 있는 한”이란 규정은 화폐도입에 따른 소유권의 양적 확대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화폐도입에 따라 가능해진 무제약적 재산축적의 가능성과 정당화된 무제약적 소유권은 타인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을 남겨 줄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더욱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이 욕구는 자연법을 위반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특히 당시 소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던 토지문제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딜레마를 낳는다. 록크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야 말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록크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해소되기 힘든 것임을 의식하고 사유화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도입하여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다.<sup>8)</sup> 즉 울타리로 둘러 쌓여져 경작된 땅에서 산출된 인간생활유지에 유용한 산물은 같은 정도로 기름진 같은 넓이의 공유지 또는 황무지로부터 생겨나는 것의 10배, 100배는 많다는 사실이다. 록크는 이 사실로부터 울타리로 둘러 쌓여 사유화 되고 경작된 10에이커의 땅에서 산출된 것이 100에이커의 공유지 또는 황무지에서 산출된 것과 같은 양이라면, 10에이커의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인류에게 90에이커의 땅을 선사한 것이 된다는 독특한 논리를 끌어낸다.(§37) 이로써 이론적으로 해소 불가능했던 무제약적 소유권과 자연법의 제1의 제약 ‘남에게도 충분하게 그리고 똑같이 좋은 것이 남아 있는 한’의 모순은 해결된다.

7) 화폐도입 이전에는 자신의 노동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결과물을 모두 자신이 축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먹고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비록 그것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이라 해도 그것이 썩기 전에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자연법을 어기는 것이고, 반면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보전이라는 이기적 목적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므로 양도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 이것은 한편으로는 록크이론의 단순함에서 결과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인클로저를 통해 사유화된 경작지와 아직 황무지 또는 공유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생산성의 엄청난 차이, 또 아메리카 대륙의 광활한 토지가 소유되지도 개간되지도 않는 채 남겨져 있던 역사적 상황(§41)에서 록크가 무의식중에 갖게 된 생각으로 국가의 전체의 부를 우선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당면목표였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사유화가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록크는 결론적으로 부지런히 일을 한 결과로써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것에 어떤 변경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노동한 사람의 것이 되며, 재산의 불공평한 분배상태는 사람들 자신의 본성상의 차이와 이를 실현시키자는 인간들의 동의의 결과이자 자연법을 어긴 부당한 개인적 행위가 아님을 과감히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무제약적 소유권은 인간의 자연권임을 선언하게 된다. 이로써 내려지는 결론은 인간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커다란 양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46)

#### 4. 노동

그렇다면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단 한가지 “노동을 가한 것”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이 자기자신이 직접 활동한 것만을 의미한다면, 록크가 아무리 무제약적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제시한다 해도, 이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재산을 정당화해주는 데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갖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 해도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록크가 자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교환하여 구매한 타인의 노동력까지도 자신의 노동안에 포함시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실제로 록크는 임노동자에 대해 언급하고 내가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은 나의 노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 28)<sup>9)10)</sup>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그것의 활동인 노동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록크자신의 소유권의 기본전제에 위배된다. 그러나 록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에게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4)<sup>11)</sup>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기간동안 팔 자유가 임노동자에게 천부적으로 있음을 시사하고 이들을 모든 소유물과 그 신체에 대한 권리마저 상실해 버린 노예와 구분한다. (§ 85) 따라서 임노동자의 존재는 록크의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가 임금과 교환한 그의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구매한 사람의 것임을 자명한 것으로 록크는 생각하였다.

9) 혼히 록크는 자산가만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 시민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의 노동개념도 자산가의 노동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되나,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하다.

10) 록크는 이외에도 생산수단의 노동 또한 그 소유자의 노동임에 관해 언급 (§28) 하나 이는 록크의 소유론이 일단 정립되고 나면 당연한 것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관해 Karen Iversen Vaughn, John Locke Economist and Social Scientist 참조.

11) 록크의 ‘자연상태’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상태이며, 이때 자유는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일없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여 또한 그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IV. 국 가

록크의 ‘자연상태’는 인간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자연적인 무제약적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과 인간의 본성적인 비이성적 측면 때문에 ‘정치적 사회’로 필연적으로 지양된다.<sup>1)</sup> 인간의 비이성적 요소는 여러 각도에서 ‘자연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첫째,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연법에 의해 규정된 무제약적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을 실현시킨다. 둘째, 자연상태에서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자연법에 따른 판결권은<sup>2)</sup> 인간의 자기편애경향 즉 “자기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격정과 복수심에 사로 잡히게 되는 나머지 너무 지나치게 체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열중하게 되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게으름과 무관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적당히 대하기 쉬운” (§125) 경향때문에 이성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세째, 자연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이것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결여된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인간의 비이성 때문에 인간은 폭력으로써 움지 못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개 그런 목적을 기어코 달성시키고, 자신이 처벌당할 짓을 했을 때 그 처벌에 저항하고 거꾸로 처벌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자연상태’ 내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인 무제약적 소유권이 충돌할 여지가 생겨나며, 그 경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연상태’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포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의하여 ‘정치적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또한 그 공동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안락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는데 있다.” (§95)<sup>3)</sup> ‘정치적 사회’에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연법 집행권을 포기

1) 이것은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에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갖춘 피조물로서의 인간’ (§12)이라는 록크자신의 인간관과 모순되는 것이다. Macpherson은 이에 대해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나 계급구분에 의거한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록크의 사회관에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록크는 한 사회안에 이성적인 인간과 비이성적인 인간이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산가는 이성적이고 이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무산자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상태가 한편 평화롭지만 반면 전쟁상태이기도 하다는 그의 이중적 태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C.B.Macpherson, *Die Politische Theorie des Besitzindividualismus* p.277.

2)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이 개인 각자의 손에 위임되어 있고 각자는 자연법위반자들을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7)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상태는 ‘평등의 상태’이다. (§4)

3) 록크에 의하면 국가는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갖는다. (§3, §85)

하고 이것을 공공사회의 수준에 위임하게 된다.(§89)

따라서 ‘자연상태’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었던데 반해 정치적 사회<sup>4)</sup>가 설립되면 첫째, 그 정치적 사회내부의 구성원 사이에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구분이 생기며, 둘째, 그 정치적 사회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 생긴다. 첫번째 불평등은 그것이 그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동의에 의한 편의적 불평등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99) 정치적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수결을 할 수 있는 자유인”(§99)들이며 다수에 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그 정치적 사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정치적 사회에 속하지 않게 되어 그 사회 구성원에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115)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고 어떤 통치체에 속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하게 된다.(§118) 이 때 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재산(property)이다. “자식으로서는 그의 아버지가 복종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아래서가 아니면—즉 그 사회의 일원으로 되지 않는다면—아버지의 소유물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 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은 그 국가의 다른 신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곳에 확립되어 있는 통치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117) 아버지가 한나라의 신민이었기 때문에 즉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의지를 갖는 순간에 그 국가의 신민이 되겠다는 동의를 한 것이며, 재산을 상속받는 순간 그 국가의 진정한 신민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향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기되고 위임된 권력에 의해 생기는 불평등은 하등의 실재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이 정의된 록크의 정치적 사회인 국가는 자산가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록크는 노예와 달리 임노동자들은 자유인이며, 정치적 사회의 구성원이니라고 이와는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85)<sup>5)</sup> 이 모순을 록크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라는 두가지 차원의 동의를 구분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법

4) ‘정치적 사회’는 첫째,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한덩어리가 되어 행동할 권리를 갖는 단체이며 둘째, 그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자연법 집행권을 포기하고 이것을 공공사회의 수준에 위임한 상태이다. 세째, 따라서 여기서는 다수파가 그 이외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개인은 다수파의 결정에 복종하고 그것에 구속된다는 의무를 지닌다. 네째, 다수파는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정부는 자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과 그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라고 정의된다.

5) 노예는 “생명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한 재산도 잃어 버리고”(§85)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예는 “정당한 전쟁에서 포로로 된 자로서 자연의 권리에 의해서 그 주인의 절대적인 지배권과 자의적인 권리에 예속되고 있는 자이다.”(§85)

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는 재산 상속을 통한 ‘명시적 동의’로 그 국가의 신민이 되는 것이외에도 “어떠한 통치제의 어떠한 부분의 영토라도 적어도 이것을 소유 또는 향유” (§119) 하는 것에 의해 표시되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자신과 상속인에게 영원히 소속되는 토지의 소유이전 또는 일주일에 불과한 체재이전 또는 단지 걸거리를 자유로이 여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전 간에 실제로 그 통치하의 영토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이 사람은 그 사실로 인해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통치체의 법률의 구속을 받게 된다. (§119) 그런데 단지 묵시적 동의만을 한 자들은 “증여나 매각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물을 내놓기만 하면” (§121) 언제라도 자유로이 그 국가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들은 이 국가를 떠나 어떤 다른 국가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비어 있는 장소에다 즉 “자유로운 그리고 아직 누구에 의해서도 점유되고 있지 않은 세계의 어떤 부분에다” (§121) 새로운 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반면 명시적 동의를 표명한 사람 즉 재산상속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종하고 있는 통치제가 해체되어 버린다거나 또는 어떤 공적인 결의로서 그가 그 국가의 일원임을 단절해 버리지 않는 한은” (§121) 영원히 그 국가의 신민이어야 하며, 자연상태의 자유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121) 이러한 방식으로 록크는 두번째 갈등 즉 정치적 사회 1)에 속한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갈등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록크는 자산가와 무산자로 구성된 국가를 머리속에 그리면서도 자산가들이 재산상속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표명함으로써 확고한 시민이 되는 것과는 달리 무산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정치적 사회에 속할 수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유동적 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단 그가 영토안에 산다는 것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 그 통치체의 지배를 받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가 그 정치적 사회에 속하지 않으려면 “아직 누구에 의해서도 점유되고 있지 않는 비어 있는 장소로” 이주하거나 다른 정치적 사회로 이주해가는 수밖에 없다. 그 영토안에 살면서 그 통치체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명확한 서약이나 명시된 약속과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그가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전연 없는 것이다” (§122)라고 하여 진정한 그의 의도가 자산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란 것을 드러내며, 따라서 록크의 이론은 기존사회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정당화하고 그의 국가개념은 이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 V. 맷 는 말

이상과 같은 록크의 소유론과 노동개념은, 자연상태에서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제한의 소유권을 실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동의에 의해 만들어 지는 정치적 사회라는 그의 국가관과 더불어 그의 정치철학전반의 역사적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록크의 정치철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689년의 영국에서는 1) 인클로우션을 통하여 비로소 배타적 사유화가 이루어 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하여 종세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으며, 2) 생산력발전을 통하여 한 국가의 총 재화의 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전개되지 못한 단계에서 그 모순관계가 확연히 개화된 상태가 아니였으며, 사회적 주요모순은 봉건귀족과 근대화 세력간의 것이었다.

따라서 배타적 소유권의 편연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몇가지 형이상학적 전제와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구하고 있는 록크의 소유론이나, 계급적 대립을 한편 의식하면서도 철저히 그 모순관계를 파악 못한 국가론은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의 이론적 반영이다. 이것은 록크의 개인적 이데올로기성이나 개인의 논리적 한계에서 결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을 이론적으로 표현해 보려던 그의 노력의 당연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시대를 이론적으로 포착한 록크의 역사적 의의이면서 동시에 그의 역사적 현실이 가한 그 이론의 한계로써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

1) 이와같은 이론의 역사적 기반을 무시한 채 록크의 이론을 그와 전혀 다른 물질적 조건위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 다시 적용해 보려는 최근의 시도는, 이론을 초역사적 당위적 원리로 취급하는 물역사적인 것으로 그것은 진정한 이론적 작업일 수 없으며 록크의 이론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는데 머물고 말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록크 이론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한 채 전면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정반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비 철학적인 태도이다.

### 참 고 문 헌

1.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first published in 1689, Written in 1681 or 1689) A Critical Edition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Peter Laslett, 1960 Cambridge.
2. 존·록크, 시민정부론, 이국찬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3. John Locke, Two Tracts on Government (written in 1660-1, first published in 1961 … an Italian edition) Edited with an Introduction, Notes and Translation by Philip Abrams , Cambridge 1967
4. Maurice Cranston, John Locke, a Biography, London 1957.
5. J.W.Gough, Introduction to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by John Locke' Oxford 1946
6. J.W.Gough, John Locke's Political Philosophy, Oxford 1950
7. J.W.Gough, The Social Contract ,A Critical Study of Its Development, Oxford ,1957
8. C.B. Macpherson, Die Politische Theorie des Besitzindividualismus , Translated by Arno Wittkind, Suhrkamp 1973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1962 의 번역본)
9. Property Its Duties and Rights, by Various Writers , London 1915
10. Walter Euchner , Naturrecht und Politik bei John Locke 1969 Frankfurt
11. Iring Fetscher, Herrschaft und Emanzipation, Zur Philosophie des Bürgertums , München 1976
12. Richard H.Cox , Locke on War and Peace, Oxford, 1960
13. I.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1974, New York
14. I.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II, 1980, New York
15. Perry Anderson, Die Entstehung des absolutistischen Staates, Translated by Gerhard Fehn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1974 의 번역본)
16. 김종현, 경제사 , 1979
17. Christopher Hill, Reformation to Industrial Revolution, 1967, Pelican
18. Christopher Hill, Change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Harvard Uni . Press 1975
19. 김철, Enclosure 운동
20. 김동수, 록크의 정치사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21. Hans Fink, The Social Philosophy, 1981

22. Theodore J. Lowi, *The End of Liberalism, Ideology, Policy and the Crisis of Public Authority* 1969 New York
23. John W. Yolton, *Locke on the Law of Nature*, in *The Philosophical Review* Lxvii (1958) 477-498
24. Neal Wood, *The Politics of Locke's Philosophy, A Social Study of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Uni. of California Press, 1983
25. 송규범, *John Locke의 재산론*, 서양사연구,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1980년 6월
26. Karen Iversen Vaughn, *John Locke, Economist and Social Scientist*, 1980 Uni. of Chicago.